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해양수산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특별회계와 신용사업특별회계 외의 사업부문을 구분한 일명 ‘방화벽’ 관련 조항(법 제167조 제2항 후단부터 제8항까지)을 삭제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를 통과(2022.12.8.)하여 2023년 6월 28일 시행 예정임에 따라 동법 시행령 내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특별회계 운영조항 폐지(안 제60조 삭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특별회계와 신용사업특별회계 외의 사업부문을 구분한 일명 ‘방화벽’ 관련 조항(법 제167조 제2항 후단부터 제8항까지)이 삭제됨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내 신용사업특별회계 운영이 사실상 불필요해졌으므로 관련조항을 폐지할 필요가 있음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금융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제 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60조(신용사업특별회계의 운영)</u> <u>중앙회는 법 제167조제3항에 따</u> <u>라 수협은행으로부터 받아 신용</u> <u>사업특별회계에 귀속된 배당금</u> <u>을 귀속과 동시에 잉여금(신용</u> <u>사업특별회계의 이월결손금이</u> <u>있는 경우에는 잉여금에서 이월</u> <u>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u> <u>다)으로 보아 같은 조 제4항에</u> <u>따라 「예금자보호법」 제3조</u> <u>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우선출</u> <u>자증권을 매입·소각할 수 있</u> <u>다.</u>	<u><삭 제></u>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연 락 처	(044) 200 - 5431